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560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22.

발의자 : 이개호 · 박홍근 · 위성곤
김현권 · 홍문표 · 주승용
황주홍 · 노웅래 · 김철민
박광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되고 있어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음.

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은 1년에 1번 시행되어, 졸업시기와 시험기간이 맞지 않으면 다음 해 자격시험을 기다려야 하며, 동 면허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관련 분야 공무원 시험의 요건이 되므로 시험응시 대기기간 만큼 창업 및 취업 기회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졸업자 이외에도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질병관리원 개설 등 취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 6).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6 중 “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”을 “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
(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학사의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
람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